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김태선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
안가결)

제8차 전체회의(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지침 마

련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안 제13조제1항), 시·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효율적 분리수거를 지원(안 제13조제2항)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 ----- ----- ----- -----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체계적·효율적----- ----- ----- ----- ----- ----- -----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③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3조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훈령, '22.12.)을 정하고 있음.

동 지침 제3조제2항²⁾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³⁾

일례로 환경부 지침은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배출 지침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지자체마다 수집·운반 체계, 처리시설 등 여건이 달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지역별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182곳)에 폐기물로 반입되었다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⁴⁾

이에 개정안은 분리수거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시·군·구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효율적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원안가결

4) 다만, 환경부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반입 후 잔재물량은 선별 과정에서 분리되는 이물질 등으로, 분리배출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로, “효율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침에 따라”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 ----- ----- ----- ----- <u>--정하여야 한다.</u>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 ----- <u>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u> ----- ----- <u>체계적·효율적</u> ----- ----- ----- ----- ----- -----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③ ----- ----- ----- <u>지침을 준수하여야 하</u> <u>며,</u> -----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